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어린이집 부근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92호)

2025. 1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어린이집 부근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2
2. 개정안 부칙	10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소회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4.

3. 회부연월일 : 2025. 11.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각종 유해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에는 유치원 부근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및 전자담배 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임.

하지만, 어린이집은 법령상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면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어린이집 부근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학교 외에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 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유치원과 같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u>학교경계</u> 또는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 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 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 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영유아보육법」 제2 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계 및 <u>학교경계</u> 또는----- ----- ----- -----.
1. 절대보호구역: <u>학교출입문으로 부터</u>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 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까지인 지역)	1. ----- <u>어린이집출입문 및 학교출입문으로부터</u> ----- ----- ----- -----

2. (생략) ② ~ ⑤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조제1호1)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교육환경”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을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음.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환경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다. ~ 라. (생략)

4. “학교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5. (생략)

□ 한편, 교육환경법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²⁾는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참고자료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구분함.
- 절대보호구역은 물론 상대보호구역에서도 절대적으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등이 있고,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³⁾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 및 시설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이 있음.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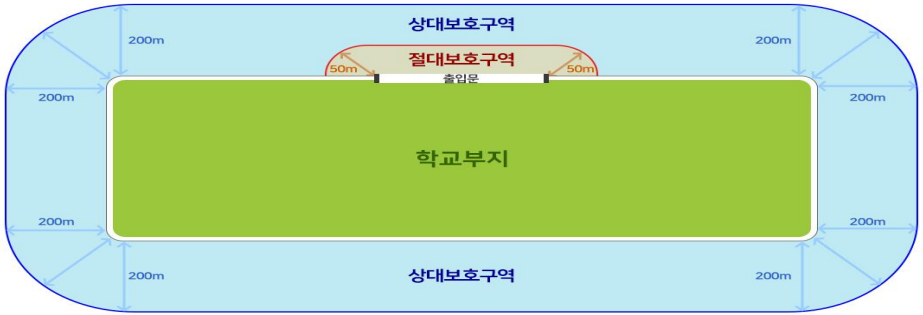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② (생략)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 ④ (생략)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개요]

정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	
설정권자	○ 시·도교육감(법 제8조제1항) - 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설정·고시	
설정범위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 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설정대상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교설립예정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 자료: 교육환경정보시스템

□ 개정안은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령상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환경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로 인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영유아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같은 개정안의 취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는 모두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 부근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기존에 영업 중인 시설 중 일부는 새롭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에 해당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직업 및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므로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을 비교형량할 필요도 있겠음.⁴⁾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2만 7,387개소(2024.12.31. 기준)이고, 유치원은 8,140개소(2025.4.1. 기준) 수준임.

4) 「법제기준과 실제」(2024년 개정증보판), 2024년 5월, 국회사무처 법제실, p. 48-49 참고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①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②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으면서 그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③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피해의 최소성), ④ 입법으로 보호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 균형이 유지(법익의 균형성)되어야 함을 의미함

[시·도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개소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유치원	740	372	306	391	266	240	182	66	2,084
어린이집	4,212	1,354	1,035	1,613	828	864	569	305	8,407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유치원	348	312	482	459	494	632	646	120	8,140
어린이집	816	877	1,338	902	911	1,234	1,723	399	27,387

* 자료: 유치원 개소수(2025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서비스), 어린이집 개소수(2024년 12월 31일 기준, 2024년 보육통계)

아울러, 현행법 제9조⁵⁾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학교의 종류(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등)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4. 「음식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유치원과 같이 일정한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임.

[현행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 제외]

조문	행위 및 시설	유	초	중·고	대학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	△	△	○
제19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
제21호	무도학원 및 무도장	○	○	△	○
제24호	노래연습장업	○	△	△	○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	△	○

※△(심의)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 가능

○(제외)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자료: 교육환경정보시스템

□ 한편, 제8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하는 경우 교육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가 필요하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관리·감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학교와 달리 시·도교육감의 관할 하에 있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외에도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에 대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제6조) 및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7조)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경우도 설치 전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및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절차를 거칠 것인지 등 법 체계적으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6)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있는데, 교육부 지침(2025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어린이집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는 어린이집 사무가 교육감에게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점과 기존 시설에 대한 소급적용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활동 제한 등 쟁점이 예상됨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기준 검토와 사전 의견 수렴·협의 절차 등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시·도교육청⁷⁾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어린이집 포함시 설정구역 과도, 규제 과다에 대한 논란, 기존 시설에 대한 이전·폐쇄 조치 및 이에 따른 민원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신중검토 의견임.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1. 24.>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7) 8개 시·도교육청(서울, 인천, 세종, 강원,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현행법 제9조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를 것인지, 일정기간의 범위에서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할 것인지 등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음.⁸⁾

문 의 처
02)6788-5192

8) < 교육환경법 부칙 관련 >

부 칙 <법률 제16683호, 2019. 12. 3.>

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법률 제20467호, 2024. 10. 22.>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운영 중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3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교육환경법」 제9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 범례(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포함)

- ×(금지)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
- △(심의)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 가능
- ○(제외)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 2024.10.22. 시행 >

NO	행위 및 시설	유	초	중고	대학 (원)	관련 법령	비고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절대 및 상대 보호 구역 모두 금지
2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	×	×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 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 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	×	×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 배출시설	×	×	×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 배출시설	×	×	×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NO	행위 및 시설	유	초	중고	대학 (원)	관련 법령	비고
10	도축업 시설	×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	×	×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 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 수집· 보관·처분 장소	△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충포 또는 화약 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	△	△	「충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충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상대 보호 구역
17	감염병 격리 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심의 가능
18	담배자동판매기	○	△	△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 임제공업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0	게임물 시설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NO	행위 및 시설	유	초	중고	대학 (원)	관련 법령	비고
21	무도학원 및 무도장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	△	△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	△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	<삭제>	-	-	-	-		
29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	△	△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30	레미콘 제조업	△	△	△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	중독자재활시설	△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2	카지노업	△	△	△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자료: 교육환경정보시스템(<https://eeis.schoolkeepa.or.kr/institution/prohibition.do>)